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9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현정·한정애·박상혁

정성호 • 민형배 • 민병덕

이광희 • 모경종 • 정준호

박정현 · 이상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상공회의소법」의 개정)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의 개정)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전단 중 "추정대차대조표"를 "추정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3조(「전기공사공제조합법」의 개정)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48조(결산보고서의 제출 등) ① | 제48조(결산보고서의 제출 등) ① |
|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| |
| 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| |
| 전까지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| |
|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잉여 | - <u>재무상태표</u> |
| 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| |
| 등을 말한다)를 감사에게 제출 | |
| 하고,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| |
| 갖추어 두어야 한다. |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60조(회계 등) ① (생 략) | 제60조(회계 등) ① (현행과 같 |
| | 승) |
|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| ② |
| 전에 예산총칙 • 추정손익계산 | |
| 서· <u>추정대차대조표</u> 와 자금계 | 추정재무상태표 |
| 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 | |
| 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| |
|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| |
|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 | |
| 우에도 또한 같다. | |

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・② (생 | 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・② (현 |
| 략) | 행과 같음) |
|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| ③ |
| 후 2개월 이내에 <u>대차대조표</u> 와 | <u>재무상태표</u> |
|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 | |
| 소,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| |
| 두고 <u>대차대조표</u> 를 공고하여야 | <u>재무상태표</u> |
| 한다. | |